

제 1157 호
1985. 8. 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열도관
편집인 : 서울특별시청 열도관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고 시			
제 541 호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준수사항고시	2		
제 542 호 :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제한고시	3		
제 543 호 : 도로상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고시	4		
제 544 호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주정차금지에 관한고시	5		
◎ 사 령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470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541 호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준수사항고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의 규정에 의
한 운전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1985. 8.12.

서울특별시장

1. 교차로내의 차량정체시 제차량등
의 진입금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
차로에 들어가하고자 하는 제차량은
교차로내에 차량등의 정체로 교차
로내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을때는
그 정지선을 넘어선 부분)에 정
차하게 되거나 그로 인하여 교차
로상의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장
소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차의 운전자는 차량보안기준령
에 규정된 것이 아닌 비상라이트,

싸이렌, 경광등, 초단파탐지기, 텔레
비전 수상기, 안테나, 청지등, 깃봉
등을 부착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유리를
불투명 (썬팅) 하게 하거나 커튼류
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흡연
또는 승객과 잡담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5.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류장
표시주 (표지판 또는 승차대) 로
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정차하
여야 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승강구의 문을 열거나 승
객이 승차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여객자동차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앞에서 정차한 여
객자동차를 앞질러 나가서는 아니
된다.

7.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내리고 타면 지체없이 출발하여야
한다.

8. 제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고장으
로 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거
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제차의 운전자는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경음기 (크릭손)를 취명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여객자동차는 운행중 승차 급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단을 통행하여야 한다.

12. 강우 또는 강설로 노면이 미끄러울 때에는 2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운전자 이외의 자를 승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3.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 자동차의 후면유리 좌측하단에 "초보운전"이라는 표지를 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가.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자라 함은 운전경험이 없는자가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항은 예외로 한다.

(1) 한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면허를 새로 취득한 자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취득한 자

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이라 함은 취득후 계속 운전기간을 말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을 말한다.

다. 초보운전 표지판은 세로 10센티미터, 가로 30센티미터 아크릴로 제작하여 붙이고 뱉수 있게

하며 밤색바탕에 녹색글씨로 표시한다.

14. 동절기(11월 1일부터 - 익년3월 31일까지)에는 삼, 곡괭이, 모래주머니(버스, 화물차, 대형특수차는 5홉입 5개이상, 택시, 합승 3/4톤 이하의 화물차는 5홉입 2개이상) 및 체인 또는 스노우 타이어를 휴대하여야 하며 눈길이나 빙판길을 운행할 때에는 체인 또는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8 호(83.9.5), 제 4 호(85.1.8), 제 193 호(79.5.9)는 이를 폐지한다.

16.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542 호

도로교통법에의한속도제한고시

도로교통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의 자동차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985. 8. 12.

서울특별시장

1. 도로별 속도제한: 별첨
2. 폐지고시: 서울시 고시 제 96 호(81.4.1)는 이를 폐지한다.
3. 시행일: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도 로 별 (단위 : m)	차 종	제한속	도 로 여 건
강남 1로 (하일동시제 - 잠실대교남단) 연장 5,000 강남 2로 (잠실대교남단 - 한남대교남단) 연장 9,000 강남 3로 (한남대교남단 - 흑서동) 연장 4,000 강남 4로 (한강대교남단 - 양화대교남단) 연장 7,700 강남 5로 (양화교 - 개화동시제) 연장 21,000 강변 1로 (천호대교북단 - 잠실대교북단) 연장 5,000 강변 2로 (잠실대교북단 - 한남대교북단) 연장 12,000 강변 3로 (한남대교북단 - 한강대교북단) 연장 9,400 대 전 로 (한강대교북단 - 양화대교북단) 연장 6,100 강변 5로 (양화대교북단 - 남지도시제) 연장 14,000 공 항 로 (양화대교남단 - 김포공항) 연장 12,000 3.1고가로 (광교 - 마장동) 연장 5,500	고속버스 승 용 일 반 버 스 화 물 차	70 km 60 km	가. 차도와 보 도가 격리되 어 있고 나. 평면교차가 없으며 다. 횡단은 입 체화 되어있 는 도로
간 선 도 로	버스·승용	60 km	편도 2차선이상 중앙선 표시, 신호등 설치 횡단시설
	화 물 차	50 km	
	250cc 이 하 이륜차	40 km	
	특 수 차	30 km	
지 선 도 로	버스·승용	50 km	편도 2차선이하 중앙선 표시 신호등 부분에 평면 횡단보도 설치
	화 물 차	50 km	
	250cc 이 하 이륜차	40 km	
이 면 도 로	버스·승용	40 km	편도 1차선이하 신호등이 없고, 교통량 시간당 500대 이하
	화 물 차	40 km	
	2 륜 차	40 km	
◎서울특별시고시 제 543 호 도로상에서의금지행위에대하고시 도로교통법 제 63조 3항 7호에 의한 도로상		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8. 12. 서울특별시장	

도로상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도로상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상에서 세차 또는 세차의 수리행위. 단 잠시 손을 보는 정도는 제외한다.
2. 야간에 등화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승차 운행하는 행위
3. 자전거에 2인이상이 승차 운행하는 행위
4. 양손을 놓고 자전거를 승차 운행하는 행위
5. 우산을 펴들고 자전거를 승차 운행하는 행위
6. 자전거, 수하차는 차도의 삼각하수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서 운행하는 행위
7. 자전거, 우마차, 수하차의 적재용량 제한

가. 자전거

- (1) 중량 50 kg
- (2) 폭 50 cm
- (3) 길이 40 cm
- (4) 높이 60 cm

나. 우마차

- (1) 폭 120 cm
- (2) 길이 300 cm
- (3) 높이 : 적재함으로부터 130 cm

다. 대형 및 소형수하차

- (1) 폭 대형 110 cm 소형 100 cm

- (2) 길이 대형 200 cm 소형 150 cm
- (3) 높이 대형 100 cm 소형 100 cm

8. (제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693 호 (62.8.1)는 이를 제지한다.
9.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 제 544 호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주정차금지에 관한 고시

도로교통법 제 28 조의 6 호, 동법 제 29 조 7 호 및 동법시행령 제 10 조 1 항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상의 주정차 금지 및 허용장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8. 12.

서울특별시장

1. (도로의 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도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간선도로라 함은 가로명이 게재된 도로(서울특별시 공고 제 673 호 84.11.7)로서 주정차 금지 및 허용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도로를 말한다.
 - 나. 이면도로라 함은 전도 2차선 미만 6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차선이 없는 도로를 말한다.

2. (주차금지장소) 주차금지장소는 다음과 같다.
- 가. 간선도로는 따로 지정한 노상 주차장 이외의 장소를 전면 주차 금지장소로 한다.
 - 나. 이면도로중 다음 장소는 주차 금지장소로 정한다.
 - (1) 학교통학로
 - (2) 시장통로
 - (3) 보행자의 교통이 혼잡한 구간
 - (4) 무단주차로 교통이 방해되는 구간
3. (정차금지장소) 다음 장소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구분없이 정차금지장소로 정한다.
- 가.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터널의 차도부분
 - 나. 횡단보도, 건널목으로부터 양측 10미터 이내의 장소
 - 다. 노선버스나 택시정류소의 양측 표시금으로부터 앞으로 10미터 뒤로 30미터 이내의 장소
 - 라. 기타 교통공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표시금을 시설한 장소
4. (예외규정) 주차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도로교통법 제 2 조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의 업무수행을 위한 주차차
 - 나. 정차가능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화물적하를 위한 주차
5. (규제표지) 규제표지는 도로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표지판과 표시금을 시설한다.
- 가. 노상주차장에는 차두어도 좋음.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허용구간에 백색 실선으로 차가로움 표시금을 시설한다.
 - 나. 정차금지 장소에는 금지구간 도로노변에 황색 실선으로 차서지못함 표시금을 시설한다. 단, 필요한 구간에는 차서지도 두지도못함 표지판을 병설한다.
 - 다. 주차금지 장소에는 차서지도 두지도못함 표지판을 시설한다.
6.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85년 8월 12일자 령제 29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양규승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마포구토목과장	토 목 기 과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주 봉 현	화 란 도시조사 및 국토개발분석 (훈련파견) 파견기간: 85.8.29-86.6.28 (10 개월)	강동구청	토목기과
이 인 근	영국 시티대학 대형건설공사 기초공법 석사과정 (훈련파견) 파견기간: 85.8.25-87.8.24 (24 개월)	건설자재시험소	지방도목기과
박 명 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훈련파견) 서민생활 환경개선대책 (석사과정) 파견기간: 85.9.9-87.6.23 (22 개월)	올림픽기획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